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28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샛별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있는 바, 산불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관련 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5. 30. ~ 2025.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